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11. 23 선고 2022가단216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성 담당변호사 남준영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D과 피고 사이의 2021. 6. 16.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7. D에게 26,000,000원을 이율 연 15.5%, 지연손해금율 연 18.5%, 대출기간 39개월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약정에 기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D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법원 2021차전751호로 위 대여원리금 합계 16,476,623원 및 그중 15,893,965원에 대하여 2021.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1. 10. 13. 확정되었다.

나. D은 2021. 6. 1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법률상 부부인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D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의 피고에게 이전하기 전에 성립하였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반면, D은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2021. 6. 16.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D과 별거 중이던 피고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로서, D이 2020. 5. 7.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재산분할명목으로 D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 주장한다.

3) D과 피고가 법률상 부부였던 점을 고려하면(피고는 D과 별거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D의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은 것이라거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를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설령 D이 위와 같은 의사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D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피고가 D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 주장 사정이 사해행위 성립이나 악의 추정을 반복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새미

